

9월 22일 공부 자가 테스트

1.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②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 위임은 종료한다.
-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에서 생긴 과실은 수임인에게 귀속한다.
- ④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.
- ⑤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.

해설 및 정답

- ①(○)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(제689조 제2항).
- ②(○)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.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(제690조).
- ③(X)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(제684조 제1항). 즉, 그 수취한 과실의 소유권은 위임인에게 귀속하는 것이다.
- ④(○)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(제684조 제2항).
- ⑤(○)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(제687조).

정답 ③

2. 조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ㄱ. 2인이 상호출자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은 위 2인이 공유한다.
- ㄴ.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그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업무집행자가 진행할 수 있다.
- ㄷ. 당사자들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급 받는 경우 그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.

- ① ㄱ ② ㄱ, ㄴ ③ ㄱ, ㄷ ④ ㄴ, ㄷ ⑤ ㄱ, ㄴ, ㄷ

해설 및 정답

- ㉠(X)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(제704조).
- ㉡(○)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업무집행자가 행할 수 있다.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(제706조 제3항).
- ㉢(○) 당사자들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급 받는 경우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(대판 2017.01.12. 2014다11574,11581). 우리 시험에 정답지문으로 출제되기 어려운 부분이라 보여집니다. 한번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

정답 ④

3.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인 수익자의 이득은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득을 의미한다.
- ②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자는 있지만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.
- ③ 수인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.
- ④ 부당이득이 금전상 이득인 경우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.
- ⑤ 선의의 수익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약의 수익자로 간주된다.

해설 및 정답

- ①(○)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한다(대판 1995.07.25. 95다14664).
- ②(○) 수익이 있더라도 타인이 그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. 수익과는 달리 손해는 실질적인 손해가 아니라 통상 생길 수 있는 손해이면 된다.
- ③(X)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고,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,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(대판 2001.12.11. 2000다13948).
- ④(○)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(대판 1996.12.10. 96다32881).
- ⑤(○)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약의 수익자로 본다(제749조 제2항).

정답 ③

4.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타인의 불법행위로 모체 내에서 사망한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지 못한다.
- ②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.
- ③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볼 수 있다.
- ④ 공동불법행위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.
- 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 손해가 그 미성년자의 감독의 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그 감독의무자도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진다.

해설 및 정답

- ①(○) 태아가 사산된 때에는 학술대립과 관계없이 어느 경우에도 태아는 권리능력을 갖지 못한다.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진 이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(대판 1976.09.14. 76다1365).
- ②(○) 채무자는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지만, 채권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(대판 2001.04.27. 2000다4050).
- ③(○)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, 그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(대판 1994.12.13. 93다59779).
- ④(X) 부진정연대채무에 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(대판 2011.04.14. 2010다91886).
- ⑤(○)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(대판 1994.02.08. 93다13605). 우리 시험에 정답지문으로 다시 출제되기 어려운 부분이라 보여집니다. 한번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

정답 ④